

|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1217     |
| 의 퇴 인  | 강선우 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7. 9. |
| 추 계 번호 | 24C1496     |

#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광역 시·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등의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7억 6,300만원, 2030년 58억 7,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91억원(연평균 58억 2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<br>(안 제9조) | 5,763 | 5,791 | 5,820 | 5,849 | 5,878 | 29,100 | 5,820 |

주: 본 추계 결과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수행한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의 내용과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하였고, 시·군·구가 설치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9조(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) | (제1항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“시·도지사”)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<br>※(제2항) 시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| (제1항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| 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9조(지역장애아동<br>지원센터) | ○        | ○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수행한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의 내용과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서는 2022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수행한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를 참고하여, 기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되 지역장애아동지원 목적으로 2개의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
- 본 추계서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비스 지원팀과 권익옹호팀, 운영지원팀에 지역장애아동지원의 목적으로 하는 ‘조기개입서비스팀’과 ‘사례관리팀’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<sup>1)</sup>
    - 따라서, 센터장 채용과 운영지원팀의 신설은 본 추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 - 추계기간 동안 조직 및 인력 규모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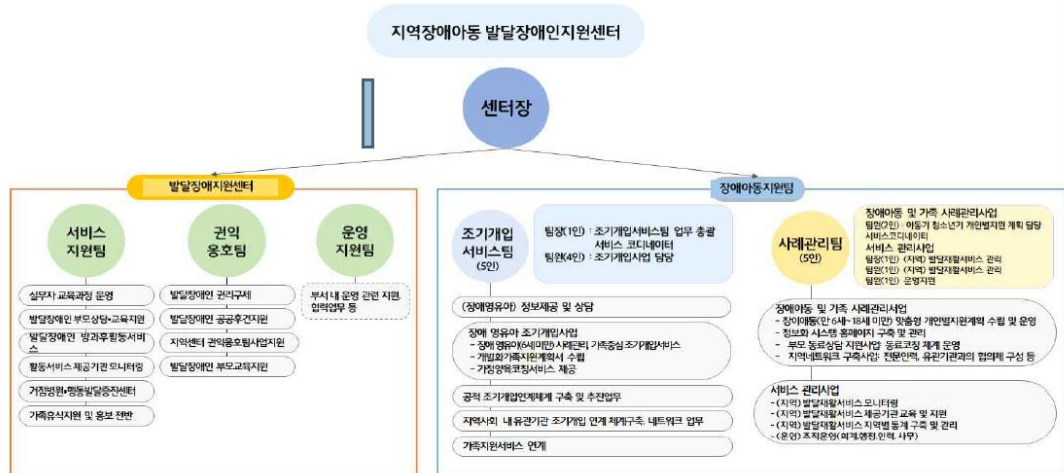
1) 본 추계서의 가정에 따라 이하 ‘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’는 기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새롭게 추가되는 조기개입서비스팀과 사례관리팀만을 지칭

- 개정안에 따라 시·군·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시·군·구의 수와 센터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제외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광역 시·도별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 - 현행법상 광역 시·도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현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시·도는 없음
  - 개정안은 광역 시·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시 전국의 모든 시·도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·운영해야 함
- (조직)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조직 구조를 적용
  - 해당 보고서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기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되, 단기적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‘조기개입서비스팀’과 ‘사례관리팀’을 추가하고, 중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개인별 지원체계와 조기발견업무를 구분하여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
  - 본 추계서는 추계기간 내에 각 지역별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해당 두 개 팀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[그림 1]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조직 운영안



자료: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,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, 2022.

## □ (인건비)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최소 배치 인원수, 보수 기준을 준용

-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는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수탁하여 수행한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」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최소 인력배치 수준을 재인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원을 적용하되, 각 팀의 1명은 팀장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<sup>2)</sup>
  - 추계기간 동안 인원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지역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최소 배치 인원(안)

| 지역 구분                   | (단위: 명)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 계     | 조기중재지원팀 | 네트워크지원팀 |
| 경기                      | 18      | 15      | 3       |
| 서울                      | 11      | 8       | 3       |
| 부산·인천·경남·경북             | 6       | 4       | 2       |
| 대구·광주·대전·강원·충북·충남·전북·전남 | 5       | 3       | 2       |
| 울산·세종·제주                | 4       | 2       | 2       |

자료: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(재작성)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2)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」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본부와 거점 분소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지역별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, 기관당 최소 인원수가 아닌 지역당 최소 인원수를 적용

- 해당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인력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을 적용하되, 호봉은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팀장 및 팀원 각각의 평균 호봉을 적용

[표 3]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인력 기준 및 보수 기준(안)

| 구 분          |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사자<br>자격 기준 | 「사회복지이용시설(장애인) 종사자 기본급(봉급표)」의 2급에 준함 | 「사회복지이용시설(장애인) 종사자 기본급(봉급표)」의 4급에 준함 |

자료: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표 4]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수 적용 현황(2023년)

| 구 분 | 보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균 호봉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팀장  | 「사회복지이용시설(장애인) 종사자 기본급(봉급표)」의 2급 | 12    |
| 팀원  | 「사회복지이용시설(장애인)종사자 기본급(봉급표)」의 4급  | 6     |

자료: 서울시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인건비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당 직급·호봉별 기본급을 기준으로 2022~2024년 해당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<sup>3)</sup>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되(수당은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만 있는 것으로 가정<sup>4)</sup>), 총 급여는 퇴직급여적립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기관부담 요율<sup>5)</sup>(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)을 가산하여 산정
- 추계결과, 전국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인건비 총액은 2026년 44억 7,200만원, 2030년 44억 7,700만원 등으로 추계

[표 5]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인건비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전국 17개소 인건비 합계 | 4,472 | 4,473 | 4,475 | 4,476 | 4,477 |

3) 2급 2.1%, 4급 3.0%

4)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, 시간외근무수당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,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알 수 없으므로, 본 추계서는 신규 충원인력이 받는 수당에 명절휴가비(봉급액의 60%씩 연 2회,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)만 있다고 가정

5) 고용보험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관부담 요율은 150명 미만 기업을 가정하여 적용하고, 산재보험에 대한 기관부담 요율은 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가정하여 적용

- (기타운영비) 본 추계서는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직원 1인당 기타운영비 평균 금액을 준용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타운영비 규모를 추계
  -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사업은 배치된 인력의 고유 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, 별도의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
  - 2023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직원 1인당 기타운영비 평균 금액은 1,147만원<sup>6)</sup>이므로 이를 적용하되, 추계기간 동안 직원 1인당 기타운영비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2024년 3월 기준)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  - 추계 결과, 전국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타운영비 총액은 2026년 12억 9,000만원, 2030년 14억 100만원 등으로 추계

[표 6]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기타운영비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전국 17개소 기타운영비 합계 | 1,290 | 1,317 | 1,345 | 1,373 | 1,401 |

- 추계결과, 시·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(각 1개소)를 기존 지역발달장애인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7억 6,300만원, 2030년 58억 7,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91억원(연평균 58억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7] 시·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추가재정소요 | 5,763 | 5,791 | 5,820 | 5,849 | 5,878 | 29,100 | 5,820 |

주: 본 추계 결과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수행한 「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」의 내용과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한 결과이며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6) 기타운영비는 임차료를 제외한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, 특근매식비, 일반용역비, 여비 등의 금액이며,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15인을 기준으로 1인당 단가를 산출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이진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assembly.go.kr |